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486
----------	------

제안년월일 : 2025년 2월 25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문성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401호)과 서울특별시장의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450호)을 일괄 심사한 결과,
-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도시에 사는 청소년들이 자연 생태계에 대한 체험을 통해 환경보호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알도록 유도하기 위함.
특히,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이를 방문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한 접근 가능성 향상을 명시하고자 함.
- 보훈보상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공원 입장료 감면 및 캠핑장(글램핑장, 캠프시설) 등의 이용료 기준 마련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제8조(시민 여가·문화활동 활성화)에서 자연생태교육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약자동행 측면에서 이용방법 다양화 조치에 대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나. 공원 입장료 면제 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추가(안 제20조제1항제15호, 제16호 신설)
- 다. 경과규정이 만료(2021년 12월)된 제로페이 감면 규정 삭제(안 제20조 제4항)
- 라. 글램핑장 및 캠프시설 등의 이용료 기준 마련 및 유형별 구분·정비(안 별표 2)
- 마. 그 외의 문구 정비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법 제2조제5호”로 한다.

1. “공원관리청”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자치구청장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공원단위”를 “공원 단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항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 할”을 “설치할”로, “역사관련시설”을 “역사 관련 시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시민 여가·문화활동 활성화)”를 “(시민 여가·문화활동·자연생태교육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가·문화활동”을

“여가·문화활동·자연생태교육”으로, “계절별 공원의 특성”을 “공원의 계절별 특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그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프로그램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중 “조치”를 “조치와 이에 대한 홍보”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단계별집행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의고시일부터2년”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12조제2호가목, 라목 및 마목 중 “된다.다만,”을 각각 “된다. 다만,”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다. 공원관리청은”을 “따른다. 공원관리청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및 이용료”를 “또는 이용료”로, “및 신용카드”를 “또는 신용카드”로, “있다.이 경우”를 “있다. 이 경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적용하여 받고”를 “적용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원시설을 3개월 이내로 이용할 경우 이행보증금(시설이용료의 15 이내)을 예치하여야”를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공원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행보증금(시설이용료의 15퍼센트 이내)을 예치하도록 하여야”로, “끝난”을

“완료된 것을 확인한”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4호 중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제24조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를 “시에”로 한다.

제28조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를 “시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자치구”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원시설 이용료(제15조제1항 관련)

1. 체육시설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공통	잔디광장	1㎡당, 2시간	20~40		◦토, 공휴일은 이용료 30% 가산 ◦야간에는 이용료 30% 가산(토, 공휴일은 제외)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풋살경기장은 청소년 이용시 30% 할인, 어린이는 무료(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 이상일 때 적용)	
	일반운동장(광장)		5~10	10~20		
	축구장	잔디	120,000~156,000	300,000~390,000		
		인조잔디	55,000~82,500	110,000~143,000		
	풋살 경기장	10인용	25,000~32,500			
		6인용	15,000~19,500			
	테니스장	실외	1면당, 2시간당	8,000~16,000		
		실내	1면당, 2시간당	25,000~37,500		
	파크골프장	어 른 1회당	4,000~6,000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3,000~4,000 2,000~3,000			
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	클럽(1회당, 개당)	1,000~2,000				
국궁장	1일(3시간)	2,000~4,000				
	1개월	20,000~40,000				
서울대 공원	성인야구장	1일	70,000~91,000	200,000~260,000	◦토, 공휴일은 이용료 30% 가산 ◦야간에는 이용료 30% 가산(토, 공휴일은 제외) ◦야간 이용시 전기료 별도 납부 ◦전광판 이용시 전광판 이용료 별도 납부 ◦리틀야구장은 주간만 운영	
		3시간	42,000~54,600			
	리틀야구장	1일	35,000~46,000	100,000~130,000		
		3시간	21,000~27,300			

2. 휴양시설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공통	야영장 (캠핑장)	일반	야영장소 1회당	10,000~30,000	◦입소일(1박2일 기준)이 공휴일이 아닌 월~목요일 인 경우 20인(야영장소 5면) 이상 이용시 30% 할인
		글램핑	야영장소 1회당	90,000~120,000	
		캠핑시설	개소당 (바비큐존 등)	5,000~20,000	
		전기료	전기 1회당	3,000~5,000	
	야영장(캠핑장) 물품대여료	야영텐트 1회당	5,000~20,000		
1인용매트 1회당		1,000~1,500			
서울대 공원	서울대공원 캠핑장	어 른 1회당	2,000~4,000		
		청소년 1회당	1,500~3,000		
		어린이 1회당	1,000~2,000		

3. 교양시설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공통	강의실	1㎡당, 1시간당	200~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 포함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 가산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공연장 (복합문화공간 포함)	1㎡당, 1시간당	100~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8시간) 단위 계산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30% 가산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실내공간에 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을 포함한다. ◦다음 사항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개정 시행일 기준에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된 경우에는 협약기한까지 적용 - 국가시설로 시설 관련법 등 별도 규정에 의해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
	야외무대	2시간당	100,000~150,000	
	청소년 체험의 숲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8,000~12,000 5,000~8,000 3,000~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일 단체 이용시 30% 할인 ◦키 140cm 이상

4. 기타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공통	사진·영상 촬영녹화	최초 1시간 초과시간당	13,000~19,500 6,500~13,000	◦영리행위에 한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참가비	1회당(1일당)	1,000~20,000	
	입장권 발매행사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	입장권 발매총액의 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홍보 및 공원이용 활성화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장소 이용료, 점용료는 별도 징수
남산 공원	차량통행료	승합자동차 (16인승 이상)	3,000~6,000	◦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긴급 및 통행허가차량·장애인 콜택시·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은 무료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2,000~4,0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공원관리청”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장·자치구청장을 말한다.</p> <p>2.·3. (생략)</p> <p>4. “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p> <p>5. “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p> <p>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u>아목</u>의 도시공원 중 조례가 정하는 주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제5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p>	<p>제2조(정의) ----- ----- --.</p> <p>1. “공원관리청”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자치구청장을 말한다.</p> <p>2.·3. (현행과 같음)</p> <p>4. ----- <u>법 제2조제3호</u>----- ----- -----.</p> <p>5. ----- <u>법 제2조제5호</u>----- ----- -----.</p> <p>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u>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u>-----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5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p>

① (생략)

②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단위공원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면적을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직접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의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역사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제8조(시민 여가·문화활동 활성화) ① 공원관리청은 시민 여가·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공원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원 단위 -----
----- . -----
----- 시장 -----

----- . -----

③ -----

----- 한다. 다만, -----

----- . -----

④ -----

----- 설치할 -----
----- 역사
관련 시설 ----- .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시민 여가·문화활동·자연생태교육 활성화) ① -----
----- 여가·문화활동·자연생태교육
----- 공원의 계절별 특성 -----

1.·2. (생략)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는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고시일부터2년이 경과한 공원

4.·5. (생략)

제12조(녹지점용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영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다. (생략)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 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

1.·2. (현행과 같음)

3. -----
----- 단계별 집행계획-----

-----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4.·5. (현행과 같음)

제12조(녹지점용허가의 세부기준)

-----.

1. (현행과 같음)

2. -----

가. -----

----- 된다. 다만.
-----.

나.·다. (현행과 같음)

라. -----

한다. 다만, -----

피하거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 자. (생략)

3. (생략)

제13조(점용허가의 기간) ①·② (생략)

③ 공원·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점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공원 또는 녹지관리청에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 또는 녹지관리청은 점용기간의 연장이 해당 공원 또는 녹지

-----.

마. -----

-----된다. 다만, -----

-----.

바. ~ 자.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13조(점용허가의 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
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①
영 제46조에 해당하는 공원의 입
장료와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
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탁관리자가 공원시설 이용
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시행
전에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
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원관
리청은 위탁관리자가 신고한 이
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
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
원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외국환
및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율은 서울특별시 금고 은
행의 전일 최종 현금 매입가를 적
용하여 받고, 거스름돈이 있을 경
우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범위

제15조(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①

범위

②

따른다. 공원관

리청은

③

또는 이용료

또는 신용카드

있다. 이

경우

적용

하고

등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다
등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다만, 서울대공원은 경기도에
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족 지원
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을 포함한다.)

〈신 설〉

〈신 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
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
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별표 1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③ (생 략)

④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
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
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
시스템을 말한다)으로 별표 1의
입장료나 별표 2의 공원시설 이
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다)-----

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② -----

범위-----

--.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결제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별표 1의 입장료 : 30퍼센트
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감면. 다만, 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하는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별표 2의 공원시설 이용료 :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제24조(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법 제16조제4항, 법 제50조제1
항 각 호의 사항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
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
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
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공원·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 ①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제24조(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 시에 -----

-----.

제28조(수당) -----
----- 범위-----
-----.

-----.

제32조(공원·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 ① -----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의 사무관할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② 공원 또는 녹지의 취득·조성 및 기존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은 제1항의 사무관할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별표 2]

공원시설 이용료(제15조제1항 관련)

공원 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 기	기타행사		
공 통	잔디광장	1㎡당, 2시간	20~40		*토, 공휴일은 이 용료 30% 가산 *야간에는 이용료 30% 가산(토, 공 휴일은 제외) *2시간 초과시 초 과시간당 이용료 는 시간당 이용 료의 50% 할인 *풋살경기장은 청 소년 이용시 30% 할인, 어린 이는 무료(이 경 우 청소년 및 어 린이의 팀 구성 원 비율이 50% 이상일 때 적용)	
	일반운동장(광장)		5~10	10~20		
	축구장	잔디	120,000~156,000	300,000~390,000		
		인조 잔디	55,000~82,500	110,000~143,000		
	풋살 경기장	10인용	25,000~32,500			
		6인용	15,000~19,500			
	테니스장	실외	1면당, 2시간당	8,000~16,000		
		실내	1면당, 2시간당	25,000~37,500		
	파크골프장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4,000~6,000 3,000~4,000 2,000~3,000	*평일 단체 이용 시 30% 할인		
	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	클럽(1회당, 개당)	1,000~2,000			
아영장(캠핑장)	아영장소 1회당	10,000~30,000	*입소일(1박2일 기준)이 공휴일이 아닌 월~목요일 인 경우 20인(아 영장소 5면) 이상 이용시 30% 할 인			
			전기 1회당	3,000~5,000		

시와 -----

-----.

② -----

-----.

[별표 2]

공원시설 이용료(제15조제1항 관련)

1. 체육시설

공원 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 기	기타행사		
공 통	잔디광장	1㎡당, 2시간	20~40		*토, 공휴일은 이용료 30% 가산 *야간에는 이용료 30% 가산(토, 공휴일은 제 외)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 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 용료의 50% 할인 *풋살경기장은 청소년 이 용시 30% 할인, 어린이 는 무료(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 이상일 때 적용)	
	일반운동장(광장)		5~10	10~20		
	축구장	잔디	120,000~156,000	300,000~390,000		
		인조 잔디	55,000~82,500	110,000~143,000		
	풋살 경기장	10인용	25,000~32,500			
		6인용	15,000~19,500			
	테니스장	실외	1면당, 2시간당	8,000~16,000		
		실내	1면당, 2시간당	25,000~37,500		
	파크골프장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4,000~6,000 3,000~4,000 2,000~3,000	*평일 단체 이용시 30% 할인		
	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	클럽(1회당, 개당)	1,000~2,000			
국공장	1일(3시간)	2,000~4,000	*만 65세 이상 이용자는 30% 할인			
		1개월	20,000~40,000			
서울 대 공원	성인아구장	1일	70,000~91,000	200,000~260,000	*토, 공휴일은 이용료 30% 가산 *야간에는 이용료 30% 가산	
		3시간	42,000~54,600			

이영장(캠핑장) 물품대여료	이영텐트 1회당	5,000~20,000	
	1인용매트 1회당	1,000~1,500	
사진·영상 촬영녹화	최초 1시간 초과시간당	13,000~19,500 6,500~13,000	·영리행위에 한함. 다만, 홍보 및 마 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 이 판단하는 경 우 면제할 수 있 다.
공원이용 프로그램참가비	1회당 (1일당)	1,000~20,000	
강의실	1㎡당, 1시간당	200~300	·회의실 등 강의 실과 유사한 형 태나 용도를 가 진 시설 포함 ·부대시설 및 장 비 이용료는 별 도 산정 ·아간은 주간 이 용료의 100% 가 산 ·2시간 초과시 초 과시간당 이용료 는 시간당 이용 료의 50% 할인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 고 시장이 판단 하는 경우 면제 할 수 있음
공연장 (복합문화공간 포함)	1㎡당, 1시간당	100~200	·일(8시간) 단위 계산 ·아간은 주간 이 용료의 30% 가 산 ·부대시설 및 장 비 이용료는 별 도 산정 ·실내공간에 한하 다. 단,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을 포함 한다. ·다음 사항의 경 우는 적용을 제 외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한법을 제40조 에 따라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개정 시행일 기준에 관리위 탁 및 사용 수익허가된 경 우에는 협약기 한까지 적용 - 국가시설로 시 설 관련법 등 별도 규정에 의해 국가가 관리하는 경 우
	아외무대	2시간당	100,000~150,000
청소년 체험의 숲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8,000~12,000 5,000~8,000	·평일 단체 이용 시 30% 할인

리틀아구장	1일	35,000~ 46,000	100,000~ 130,000	(토, 공휴일은 제외) ·아간 이용시 전기료 별도 납부 ·전광판 이용시 전광판 이용 료 별도 납부 ·리틀아구장은 주간만 운영
	3시간	21,000~ 27,300		

2. 휴양시설

공원 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공통	이영장 (캠핑장)	일반	이영장소 1회당	10,000~30,000	·입소일(1박2일 기준)이 공휴 일이 아닌 월~목요일인 경 우 20인(이영장소 5면) 이 상 이용시 30% 할인
		글램핑	이영장소 1회당	90,000~120,000	
		캠핑 시설	개소당 (비비규준 등)	5,000~20,000	
		전기 료	전기 1회당	3,000~5,000	
	이영장(캠핑 장) 물품대여료	이영텐트 1회당	5,000~20,000		
		1인용매트 1회당	1,000~1,500		
서울 대공 원	서울대공원 캠핑장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 ~ 4,000 1,500 ~ 3,000 1,000 ~ 2,000		

3. 교양시설

공원 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공통	강의실	1㎡당, 1시간당	200~300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 를 가진 시설 포함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아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 가산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 당 이용료의 50% 할인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 할 수 있음
		1㎡당, 1시간당	100~200	·일(8시간) 단위 계산 ·아간은 주간 이용료의 30% 가산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실내공간에 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을 포함 한다. ·다음 사항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에 따라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개정 시행일 기준에 관리위탁 및 사 용수익허가된 경우에는 협약기간까지 적용 - 국가시설로 시설 관련법 등 별도 규정 에 의해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
	아외무 대	2시간당	100,000~150,000	
	청소년 체험의 숲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8,000~12,000 5,000~8,000 3,000~5,000	·평일 단체 이용시 30% 할인 ·키 140cm 이상

		어린이 1회당	3,000~5,000	◦ 키 140cm 이상
	국공장	1일(3시간)	2,000~4,000	◦만 65세 이상 이용자는 30% 할인 ◦청소년·어린이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1개월	20,000~40,000	
	입장권 발매행사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	입장권 발매총액의 10~15%	◦시정홍보 및 공원이용 활성화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정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장소 이용료, 점용료는 별도징수
부산대공원	차량통행료	승합자동차 (16인승이상)	3,000 ~ 6,000	◦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긴급 및 통행허가차량 · 장애인콜택시 ·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은 무료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15인승이하)	2,000 ~ 4,000	
서울대공원	성인 야구장	1일	70,000 ~ 91,000	◦토, 공휴일은 이용료 30% 가산 ◦야간에는 이용료 30% 가산 (토, 공휴일은 제외)
		3시간	42,000 ~ 54,600	
	리틀 야구장	1일	35,000 ~ 46,000	◦야간 이용시 전기료 별도 납부 ◦전광판 이용시 전광판 이용료 별도 납부 ◦리틀야구장은 주간만 운영
		3시간	21,000 ~ 27,300	
서울대공원 캠퍼장	어린이 1회당	2,000 ~ 4,000		
		청소년 1회당	1,500 ~ 3,000	
		어린이 1회당	1,000 ~ 2,000	

4. 기타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공통	사진·영상 촬영녹화	최초 1시간 초과시간당	13,000~19,500	◦영리행위에 한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정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6,500~13,000	
	공원이용 프로그램참가비	1회당 (1일당)	1,000~20,000	
	입장권 발매행사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	입장권 발매총액의 10~15%	◦시정홍보 및 공원이용 활성화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정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장소 이용료, 점용료는 별도 징수
남산공원	차량통행료	승합자동차 (16인승 이상)	3,000 ~ 6,000	◦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긴급 및 통행허가차량·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은 무료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2,000 ~ 4,000	